
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7호의3 중 “8천만원(수도권은 1억3천만원)”을 “1억원(수도권은 1억6천만원)”으로 한다.

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제6호 및”을 “제6호, 제9호 및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9호 중 “소형·저가주택”을 “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·저가주택”으로, “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”을 “소유하고 있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관한 적용례)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(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)한 경우의 입주자 선정에 관하여는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<p>다)의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며,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경우에는 <u>제6호 및 제11호</u>를 적용하지 않는다.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>9. <u>소형·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</u></p> <p>10.·11. (생략)</p>	<p>----- ----- ----- <u>제6호, 제9호 및</u> ----- -----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<u>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·저가주택</u>----- ----- <u>소유하고 있는</u> ----- -----</p> <p>10.·11.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